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로고	정보공개서	인터넷 주소
LOTTE <i>Super</i>	등록번호	20231895
	최초 등록일	2023년 12월 26일
	최종 등록일	2026-02-19

[롯데슈퍼]

정 보 공 개 서

롯데쇼핑(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롯데쇼핑(주)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1

(슈퍼사업부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4층)

대표번호 : 02-2290-5600

FAX : 02-2290-5997

E - mail : webmaster@lottesuper.co.kr

담당부서 : 가맹전략팀

대표번호 : 02-2290-5743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소			
롯데쇼핑(주)	롯데슈퍼(LOTTE SUPER) 외 1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1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3층,4층)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70.7.2.	1979.12.5 (2001.2.16)	김원재 신동빈	02-2290-5743	02-2290-5997
	법인등록번호	110111-0000086	사업자등록번호	104-81-26067 (206-85-11698)	

※ (괄호)내에 기재한 사항은 슈퍼사업부의 정보임.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등기임원	신동빈	롯데슈퍼 외 1개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1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3층,4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02-2290-5743	02-2290-5997
등기임원	김원재	롯데슈퍼 외 1개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1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3층,4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02-2290-5743	02-2290-5997
등기임원	심수옥	롯데슈퍼 외 1개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1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3층,4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02-2290-5743	02-2290-5997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등기임원	조상철	롯데슈퍼 외 1개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1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3층,4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02-2290-5743	02-2290-5997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등기임원	한재연	롯데슈퍼 외 1개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1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3층,4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02-2290-5743	02-2290-5997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등기임원	조현근	롯데슈퍼 외 1개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1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3층,4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02-2290-5743	02-2290-5997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등기임원	히로유키 카나이	롯데슈퍼 외 1개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1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3층,4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02-2290-5743	02-2290-5997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등기임원	정창국	롯데슈퍼 외 1개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1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3층,4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02-2290-5743	02-2290-5997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미등기 임원	차우철	롯데슈퍼 외 1개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3층,4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02-2290-5743	02-2290-5997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미등기 임원	정원호	롯데슈퍼 외 1개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3층,4층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	02-2290-5743	02-2290-5997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미등기 임원	현영훈	롯데슈퍼 외 1개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3층,4층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	02-2290-5743	02-2290-5997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미등기 임원	홍재환	롯데슈퍼 외 1개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3층,4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02-2290-5743	02-2290-5997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미등기 임원	심영석	롯데슈퍼 외 1개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3층,4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02-2290-5743	02-2290-5997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계열회사	롯데지알에 스(주)	롯데리아 외 2개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17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차우철	02-709-1114	02-709-1003		
	법인등록번호		110111-0262850	사업자등록번호	106-81-2349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계열회사	(주)코리아세븐	세븐일레븐 외 2개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7(천호동,이스트센트럴타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홍철	02-1577-0711	02-2679-6860		
	법인등록번호		110111-0899976	사업자등록번호	208-81-27413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계열회사	롯데칠성음 료(주)	롯데칠성음 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0길 15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윤기	02-3479-9114	02-535-8619		
	법인등록번호		110111-0003684	사업자등록번호	214-81-07770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계열회사	롯데웰푸드 (주)	나뚜루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1길 10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신동빈 이영구 이창엽	02-2670-6114	02-2670-6184		
	법인등록번호		110111-6536481	사업자등록번호	186-81-00924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롯데슈퍼]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추가 설명
명 칭	롯데슈퍼	
상 호	롯데슈퍼 0000가맹점	
상표(서비스표)	LOTTE <i>super</i>	서비스표 등록번호 : 4101294970100 (만료일 : 2026.03.20)
광 고	-	-
그 밖의 영업표지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24,731,773,872	15,464,184,273	9,267,589,599	8,814,417,014	337,599,303	-371,210,162
2023년	23,439,306,045	14,010,715,192	9,428,590,853	8,648,595,514	482,219,242	324,057,651
2024년	30,605,255,139	16,253,056,200	14,352,198,938	8,413,294,214	380,851,252	-758,823,552

*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감사보고서 기준

그 근거자료는 별첨1.와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현 직위	사업 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신동빈 (비가맹)	롯데쇼핑(주) 대표이사	2025.03~현재	롯데쇼핑(주)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김원재 (비가맹)	롯데쇼핑(주) 사내이사	2025.03~현재	롯데쇼핑(주) 사내이사	회사업무 총괄
심수옥 (비가맹)	롯데쇼핑(주) 사외이사	2022.03~현재	롯데쇼핑(주) 사외이사	회사업무 총괄
조상철 (비가맹)	롯데쇼핑(주) 사외이사	2022.03~현재	롯데쇼핑(주) 사외이사	회사업무 총괄
한재연 (비가맹)	롯데쇼핑(주) 사외이사	2024.03~현재	롯데쇼핑(주) 사외이사	회사업무 총괄
조현근 (비가맹)	롯데쇼핑(주) 사외이사	2025.03~현재	롯데쇼핑(주) 사외이사	회사업무 총괄
히로유키 카나이 (비가맹)	롯데쇼핑(주) 사외이사	2025.03~현재	롯데쇼핑(주) 사외이사	회사업무 총괄
정창국 (비가맹)	롯데쇼핑(주) 사외이사	2025.03~현재	롯데쇼핑(주) 사외이사	회사업무 총괄
차우철 (가맹)	롯데쇼핑(주) 슈퍼사업부 사장	2025.12~현재	롯데쇼핑(주) 슈퍼사업본부 대표이사	슈퍼사업본부 총괄
정원호 (가맹)	롯데쇼핑(주) 슈퍼사업부 전무	2021.12~현재	롯데쇼핑(주) 슈퍼사업본부 영업본부장	슈퍼사업본부 영업 본부 총괄
현영훈 (가맹)	롯데쇼핑(주) 슈퍼사업부 상무보	2021.12~현재	롯데쇼핑(주) 슈퍼사업본부 가맹사업부문장	슈퍼사업본부 가맹사업부문
홍재환 (가맹)	롯데쇼핑(주) 슈퍼사업부 상무보	2022.12~현재	롯데쇼핑(주) 마트사업본부 상품혁신부문장	마트사업본부 상품혁신부문
심영석 (가맹)	롯데쇼핑(주) 슈퍼사업부 상무보	2024.12~현재	롯데쇼핑(주) 슈퍼사업본부 슈퍼운영부문장	슈퍼사업본부 슈퍼운영부문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2024년 12월말)기준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롯데쇼핑(주)	78	5	18,832
롯데쇼핑(주) 슈퍼사업부	4	-	3,633

※ 롯데쇼핑(주)의 임직원수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사업보고서 기준

※ 슈퍼사업부 직원수는 24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총인원 기준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 맹 본 부	롯데슈퍼	가맹사업경영	'11.10월~현재	'롯데슈퍼'(등록번호 20231895)라는 브랜드의 슈퍼마켓 사업을 경영
	롯데마켓999	가맹사업경영	'11.10월~'21. 7월 (등록취소)	'롯데마켓999'(등록취소)라는 브랜드의 기타소매업 사업을 경영
	롯데프레시	가맹사업경영	'20.4월~현재	'롯데프레시' (등록번호 20200564)라는 브랜드의 기타소매업 사업을 경영
특 수 관 계 인 · 계 열 회 사	롯데지알에스(주)	가맹사업경영	'80.7월~현재	'롯데리아'(등록번호 : 20080100155) 패스트푸드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경영	'07.2월~현재	'엔제리너스'(등록번호 : 20080100153) 커피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경영	'14.11월~현재	'크리스피크림'(등록번호 : 20140778) 제과제빵 가맹사업경영
	롯데웰푸드(주)	가맹사업경영	'99.7월~현재	'나뚜루'(등록번호 : 20080100085) 아이스크림/빙수 가맹사업경영
	(주)코리아세븐	가맹사업경영	'89.5월~현재	'세븐일레븐' (등록번호 : 20080100064) 편의점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경영	'90.11월~'24.03월 (등록취소)	'미니스톱' (등록번호 : 200080200069) 편의점 가맹사업경영
			'20.12월~'22.06월 (등록취소)	'수퍼바이츠' (등록번호 : 20210290) 편의점 가맹사업경영
	롯데칠성음료(주)	가맹사업경영	'10.11월~'23.04월 (등록취소)	'롯데칠성음료'(등록번호: 20100100112) 음료 가맹사업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서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 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LOTTE <i>super</i>	상표권	2004.12.03출원 2006.03.20등록	41-2004-0026141 41-0129497-0100	롯데쇼핑(주)	2026.03.20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롯데슈퍼] 가맹사업 현황

1. [롯데슈퍼]를 시작한 날 : 2010년 5월 13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01년 5월 16일)

2. [롯데슈퍼]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롯데쇼핑(주)	롯데슈퍼	이인원	2001.05.16~2007.03.08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1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3층,4층)
	롯데슈퍼	이철우	2007.03.09~2012.03.22	
	롯데슈퍼	신 현	2012.03.23~2014.04.24	
	롯데슈퍼	이인원	2014.04.25~2014.06.09	

	롯데슈퍼	이원준	2014.04.10~2017.03.30	
	롯데슈퍼	강희태	2017.03.31~2021.11.30	
	롯데슈퍼	강성현	2021.12.01~2023.03.23	
	롯데슈퍼	김사무엘상현 강성현 정준호	2023년 03월 24일 ~ 2025년 3월 23일	
	롯데슈퍼	김사무엘상현 신동빈 강성현 정준호	2025년 03월 24일 ~ 2025년 11월 30일	
	롯데슈퍼	김원재 신동빈	2025년 12월 01일 ~ 현재	

3. [롯데슈퍼] 업종

영업표지	업종	
롯데슈퍼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종합소매점	식품, 잡화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롯데슈퍼]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81	16	65	128	7	121	173	19	154
서울	12	2	10	28	1	27	41	1	40
부산	3	1	2	9	1	8	10	1	9
대구	2	-	2	5	-	5	6	-	6
인천	4	-	4	6	-	6	8	1	7
광주	2	-	2	1	-	1	3	-	3
대전	2	-	2	2		2	3	-	3

울산	-	-	-	1	-	1	1	-	1
세종	-	-	-	-	-	-	1	1	-
경기	27	3	24	45	3	42	60	6	54
강원	5	-	5	7	-	7	8	2	6
충북	3	1	2	3	-	3	4	1	3
충남	4	-	4	5	-	5	6	1	5
전북	4	3	1	5	2	3	8	4	4
전남	5	5	-	3	-	3	3	-	3
경북	4	-	4	5	-	5	7	1	6
경남	4	1	3	3	-	3	4	-	4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롯데슈퍼]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년	32	-	14	2	-	16
2023년	16		8	1	1	7
2024년	7	15	3	-	-	19

6. [롯데슈퍼]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 사업 현황

당사는 [롯데슈퍼]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 및 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 본부	롯데쇼핑(주)	롯데슈퍼	20200564	종합소매점	16 / 65	7 / 121	19 / 154
	롯데쇼핑(주)	롯데마켓999	20110100500 (등록취소)	종합소매점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롯데쇼핑(주)	롯데프레시	20200564	종합소매점	109 / 124	135 / 91	123 / 45
계열 회사	롯데지알에스(주)	롯데리아	20080100155	패스트푸드	1,193 / 106	1191 / 97	1,209 / 77
		엔제리너스	20080100153	커피	335 / 77	302 / 74	235 / 62
		크리스피크림	20140778	제과제빵	58 / 70	54 / 73	53 / 74
	롯데웰푸드(주)	나뚜루	20080100085	아이스크림	34 / 2	25 / 1	19 / 1
	(주)코리아세븐	세븐일레븐	20080100064	편의점	12,553 / 124	12,783 / 154	12,081 / 71
		미니ストップ	20080200069 (등록취소)	편의점	1,508/17	190/3	-
		수퍼바이츠	20210290 (등록취소)	패스트푸드	-	-	-
	롯데칠성 음료(주)	롯데칠성 음료	20100100112 (등록취소)	(건강) 식품	717 / 0	-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 과 그 산정기준

[롯데슈퍼] 가맹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제외)

지역	2024 년말 가맹 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매출액(상한)		연간 평균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19	1,514,282	13,530	2,468,060	40,608	712,261	6,449	
서울	1	-	-	-	-	-	-	해당없음
부산	1	-	-	-	-	-	-	해당없음
대구	-	-	-	-	-	-	-	해당없음
인천	1	-	-	-	-	-	-	해당없음
광주	-	-	-	-	-	-	-	해당없음
대전	-	-	-	-	-	-	-	해당없음
울산	-	-	-	-	-	-	-	해당없음

세종	1	-	-	-	-	-	-	해당없음
경기	6	1,532,608	14,459	1,956,347	15,401	1,108,869	13,974	
강원	2	-	-	-	-	-	-	해당없음
충북	1	-	-	-	-	-	-	해당없음
충남	1	-	-	-	-	-	-	해당없음
전북	4	-	-	-	-	-	-	해당없음
전남	-	-	-	-	-	-	-	해당없음
경북	1	-	-	-	-	-	-	해당없음
경남	-	-	-	-	-	-	-	해당없음
제주	-	-	-	-	-	-	-	해당없음

8. [롯데슈퍼]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①	평균 영업기간 (일) ②
2024 년	19	580 일 (19 개월)

①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가맹점 수를 기준

②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한 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가맹점 수로 나눈 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롯데슈퍼]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 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43]쪽을 참고하십시오.

(단위: 천원, 부가세 제외)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판촉비 합계	2024년	1,023,547	(비공개)		
	소계		945,360			
광 고 비	(비공개)					
	소계		78,186	(비공개)		
판 촉 비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 5개 시중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 기관 상호	담당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하나은행	전 지점	서울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하나은행)	1599-1114
국민은행	전 지점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1588-9999
농협	전 지점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16	1661-3000
신한은행	전 지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	1599-8000
우리은행	전 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은행	1588-5000

귀하는 기존 사업자용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시중은행 중 가맹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은행을 방문하시어, 당사의 사업자번호를 고지하신 후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가맹금을 예치하여 주시면 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

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아래와 같은 형의 선고를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롯데슈퍼]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시설·집기투자비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추정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	---------------	---------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입비	11,000	계약체결 시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 반환 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	위약금	가맹점 자격 확보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이행 보증금	165m ² 점	15,000	개점시까지	Type1 한정	
	330m ² 점	24,000			
	660m ² 점	27,000			
상품 보증금	165m ² 점	30,000			· 각종 대금의 미 지급 (상품대금, 로열티 및 전산유지보수료 미 지급 등의 채무 발생)
	330m ² 점	50,000			
	660m ² 점	75,000			
준비금	상품(최초)	70,000	개점시까지	Type2 한정	
	소모품(최초)	7,000			
시설집기 보증금	10,000	· 기타 계약 위반 사유 발생시			
이행보증금	100,000				

※ 위 계약이행보증금은 롯데슈퍼 경영을 위한 계약 유지, 상품 대금 등 귀하의 당사에 대한 각종 손해배상을 위한 상당액으로 귀하는 위 금액을 가맹본부에 예약하여야 합니다. 단, 가맹본부의 판단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증보험을 제공함으로써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 완료 후 즉시 해지하게 됩니다.

※ Type2에 따른 준비금은 개점 준비를 위하여 당사가 미리 구매한 상품을 담보하기 위한 금액으로서 실 구매 이후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비고	
	Type 1			Type 2		
	165m ² 점	330m ² 점	660m ² 점			
합계	56,000	85,000	113,000	198,000	-	
가입비	11,000	11,000	11,000	11,000	부가세 포함	
보증금	이행	15,000	24,000	27,000	100,000	부가세 없음
	상품	30,000	50,000	75,000	-	
	시설 집기	-	-	-	10,000	
준비금	상품				70,000	부가세 포함
	소모품				7,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21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0m²점 기준 /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	401,808	4,018	-	-	-
시설공사	가맹점주 자율 선정업체	125,944	1,259	업체별로 상이	업체별로 상이	-
집기비품		177,614	1,776			-
최초 상품비	가맹본부	90,000	900	공급 시	미 공급 시	-
소모품비		8,250	83			-

위 표의 금액은 그 동안 롯데슈퍼와 유사한 롯데슈퍼 직영점 개점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공사, 집기비품의 설치에 대하여는 귀하의 선택에 따라 가맹본부 외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으나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가맹지원팀 (02-2290-5687)	담당자 배정→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현장 조사 등 시장분석→최적의 입지 도출→가맹 희망자에 동의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 포함 2인 교육 참석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파산·회생 신청자가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미성년자가 아닐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롯데슈퍼]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단, 구체적인 물품은 점포 사정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한편, 당사는 가맹금을 분납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부담기준은 [43]쪽에 나와 있습니다.

[TYPE-1]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미반환 사유	비고
총계		실비+α				
건물 임차료	임대인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관리비 포함
로열티	가맹본부	매출액의 2% (VAT별도)	익월5일	미반환	수수료	상표,서비스표 등 사용료
신용카드 수수료	각 카드사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카드사에 지급
상품권 수수료	상품권 회사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상품권 발행사에 지급
간편결제 수수료	대상업체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대상업체에 지급
수도광열비	협력업체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전기,수도, 가스료 등
POS 유지보수료		101천원/월 (평균)	익월5일	미반환	사용	2대기준(네트워 크장비등포함) ※ 점포별 상이
인터넷회선 사용료		55천원/월 (평균)	익월5일	미반환	사용	기업용 인터넷 ※ 점포별 상이
		33천원/월 (평균)	익월5일	미반환	사용	일반 인터넷 ※점포별 상이
POP프린터 리스료		330천원/월 (평균)	익월5일	미반환	사용	가맹본부
영업배상책임보험료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협력업체사용은

무인경비비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권장사항임
방제용역비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 점포별 상이
송금 수수료	은행	실비	송금 시	미반환	사용	은행거래수수료
L.Point 사용료	가맹본부	실비	익월5일	미반환	사용	비용청구 = 적립-사용
점포환경개선비용	미지정	가맹본부분담비용 제외한 나머지	지정일	미반환	사용	46쪽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2%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날까지	미반환	수수료	가맹계약에 따른 금전 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점포 운영 시 재고관리, loss비용 등 상기 조항 외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물가변동 등 기타의 사유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TYPE -2]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미반환 사유	비고
일반관리비	점포 관리인	실비	지정일	미반환	수수료	점 개별관리비
신용카드 수수료	각 카드사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
상품권 수수료	상품권 회사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
간편결제 수수료	대상업체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
수도광열비	협력업체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전기, 수도 등
전산유지보수료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
통신비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
제세공과금	각 지자체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
영업배상책임보험료	협력업체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본부 협력업체
보안 경비비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이용은 권장사항
은행수수료	은행	실비	송금 시	미반환	사용	은행거래수수료
점포환경개선비용	가맹본부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2%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날까지	미반환	수수료	가맹계약에 따른 금전 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시 부담
폐기상품 비용	가맹본부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가맹본부 인정 비
재고상품 부족	가맹본부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용 초과 시 부담

인건비	미지정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인력 사용 비용
수선비	가맹본부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발생 수리비용
정수기 대여료	협력업체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
배달비	미지정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점 배달비용
비품 구입비	가맹본부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
소모품비	가맹본부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
쓰레기 처리비	종량제 봉투 구매처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폐기물 및 음식물 처리비
청소용품 구입비	미지정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
집기 사용료	가맹본부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전자가격표 사용 비용
유니폼비	가맹본부	실비	지정일	미반환	사용	유니폼 구매비

※ 점포 운영 시 재고관리, loss비용 등 상기 조항 외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물가변동 등 기타의 사유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TYPE-2 정산 방식 특성상 영업 비용 부담 항목 중 일부는 당사가 지급 대행한 후 경영주의 정산금에서 실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영업관리	점포의 청결, 발주, 진열, 판매 등의 운영 관리	월 1회	문의: 가맹지원팀 (02-2290-5687)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롯데슈퍼]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TYPE-2의 경우에는 가맹사업 투자 및 운영의 특성상 양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에게 지급할 양도에 관련된 비용은 없으나 귀하의 사유로 가맹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가맹자격을 획득한 양수인은 양도인의 기존 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을 간주되며 새로운 비용이 발생할 경우 양수인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40]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

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반품이 불가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롯데슈퍼]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롯데슈퍼]는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상품의 구체적인 품목명은 생략합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롯데슈퍼]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 부동산·용역·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롯데슈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

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나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가 [롯데슈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 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권고한 거래처로부터 매입하는 상품	가맹본부의 추천상품 이외의 상품취급 시 품질, 안전 등 롯데슈퍼의 이미지를 위하여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을 것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의 판매중지 및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의 상품 등 공급중단, 가맹계약 갱신 거절 및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 될수 있음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상품·용역명	제한 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담배·주류 등	청소년보호 관련 법령상 판매 제한 상품	당사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 배상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 가격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전 상품	개별상품별로 상이	발주시스템을 통하여 공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당사의 독자적 PB상품·해외소싱 상품, 행사상품 등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화의 필요성이 더욱 큰 상품에 대하여 당사의 권장 판매가격과 다르게 판매가격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상권특성, 인근 경쟁점포의 가격 등을 비교 분석하는 등 판매가 조정에 필요한 근거를 상세히 기재한 문서를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슈퍼마켓 등의 소매업	롯데프레시 롯데슈퍼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직선거리 반경 500m내 상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맹희망자와 협의하에 결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	--------	-----------

<p>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p> <p>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p> <p>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p> <p>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영업지역 변경 완료</p>	<p>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여부 회신</p> <p>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p>
---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롯데슈퍼'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롯데슈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 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21.0%	79.0%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 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 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롯데슈퍼]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Type 별로 상이합니다,

구분	Type - 1	Type - 2
계약 기간	5년	3년
갱신 기간	5년	3년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 (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 → ②, 아니오 → 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 → ④, 아니오 → 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 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 → ⑤, 아니오 → 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통지를 하였습니까? 예 → B, 아니오 → 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 → C, 아니오 → ⑥	
⑥ 변경된 계약 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 → B, 아니오 → 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 → B, 아니오 → 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 → E, 아니오 → 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변경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 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TYPE-1]

구분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 지급의무 지체	(1)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상품 등의 대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제37조
나. 자격 미달	(1)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2)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 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3)기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의무 해태	<p>(1)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판매방법이나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p> <p>(2)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p> <p>(3)가맹본부가 업계의 통상적인 수준의 비용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p>	
----------	--	--

[TYPE-2]

구분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의무 해태	<p>(1) "가맹점사업자"가 "롯데슈퍼"의 운영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맹 계약 제3조 (2),(3),(4)항(경영에 대한 "경영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권리행사의 범위), 제7조("경영주"의 투자), 제10조(점포 공사 및 사용권의 허가), 제16조 (2)항(채권 채무 관계의 처리방법), 제17조(영업활동), 제19조(대 고객 서비스), 제22조(상품의 적절한 유지 및 관리), 제23조(상품의 매입), 제24조(판매가격의 결정), 제26조 (4)항(경영주의 정산금), 제29조 (3)항(최저수익 보장), 제30조(점포 등의 보전), 제32조 (3)항(보험), 제33조 (3)항(회계자료의 작성과 세무 신고의 협력), 제35조(실재고 조사), 제36조(입점조사), 제37조 (2)항(자료제출 및 전송)을 2회 이상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서면으로 통보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p> <p>(2) "롯데슈퍼" 개점시 등록완료 및 등록진행중인 상품판매 인 허가 (기타식품 판매업, 식육 판매업, 담배소매인 지정 등)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취소된 경우</p> <p>(3)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롯데슈퍼" 영업을 중단한 경우</p> <p>(4) "가맹점사업자"가 "롯데슈퍼"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나 재고수불 기법 등 변칙적인 행위를 지속했을 경우 및 서비스</p>	제 42조

	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5) "회사"가 "롯데슈퍼"의 정상적인 유지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상황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6)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롯데슈퍼 가맹점"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입문교육 과정에서 성적불량으로 불합격한 후, 재 교육을 받았으나 재차 불합격한 경우	제20조 (Type - 1) 제11조 (Type - 2)
준공 지연, 인수 지체 등으로 개점일을 2월 이상 연기하는 경우	제14조1항 (Type - 1) 제 12조 (Type - 2)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어 개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개점을 취소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류제출 지연,대금납부 지연,개점준비 소홀 등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제14조2항 (Type - 1)
아래 [별표 1],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제38조 1항 (Type - 1) 제43조 2항 (Type - 2)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에 가맹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는 경우(상대방에게 해지일로부터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약정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함)	제39조 (Type - 1) 제41조 (Type - 2)
가맹본부가 약정한 상품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등 가맹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제38조3항 (Type - 1) 제44조 (Type - 2)

[별표 1] Type - 1

구분	사유
가. 지급의무 지체	(1)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등의 대금의 지급의무를 1개월에 걸쳐 5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 (2)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의 지급의무를 2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 (3)가맹점사업자가 연체한 상품 등의 대금이 상품거래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나. 기망	(1)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의 산정을 위한 순매출액을 2회 이상 누락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다. 장애 초래	(1)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라. 의무 해태	<p>(1)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제26조에 따른 상품매입 및 재고유지, 품질관리 의무를 1개월에 걸쳐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p> <p>(2)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제22조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 조치 요구에 1개월 이상 응하지 않거나, 시정한 결과가 운영 기준에 2회 이상 부합하지 않은 경우</p> <p>(3)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제27조에 따른 판매가격 조정 협의 의무를 1개월에 걸쳐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p> <p>(4)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제35조 1항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영업을 양도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p> <p>(5)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가맹점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p> <p>(6)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 받고 7일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p> <p>(7)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p>
----------	---

[별표 2] Type - 2

구분	사유
의무 해태	<p>(1) 가맹 계약 제3조 2, 3, 4항(경영에 대한 "경영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권리행사의 범위), 제7조("경영주"의 투자), 제10조(점포 공사 및 사용권의 허가), 제16조 2항 (채권채무 관계의 처리방법), 제17조(영업활동), 제19조(대 고객 서비스), 제22조(상품의 적절한 유지 및 관리), 제23조(상품의 매입), 제24조(판매가격의 결정), 제26조 4항 (경영주의 정산금), 제29조 3항 (최저수익 보장), 제30조(점포 등의 보전), 제32조 3항 (보험), 제33조 3항 (회계 자료의 작성과 세무 신고의 협력), 제35조(실재고 조사), 제36조(입점조사), 제37조 2항 (자료제출 및 전송)을 위반하였을 경우</p> <p>(2)가맹점사업자가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롯데슈퍼"의 중요한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롯데슈퍼"의 경영의 전반적인 혹은 실질적인 부분에 관여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p> <p>(3)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롯데슈퍼" 영업을 중단한 경우</p> <p>(4)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 계약 제35조의 "실 재고 조사" 또는 제36조의 "입점조사"를 거부한 경우</p> <p>(5)가맹점사업자가 "회사"의 동의 없이 고의적으로 가맹 계약 부속명세서 Ⅲ (2)항 ⑥호에서 정한 채권채무계정 중 "회사"에 대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p> <p>(6)가맹계약 제5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신용에 중대한 거짓이나 허위가 있는 경우로서 본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p> <p>(7)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불신 행위가 있었을 경우. "중대한 불</p>

	신행위"라 함은 고의, 악의, 기만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어느 일방만의 이익을 위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15조의 즉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아래 [별표 3] 기재사유 중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별표 3]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 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8조 2항 (Type 1)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제43조 1항 (Type 2)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 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 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갱신이나 재계약 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 (다만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본 호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 한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롯데슈퍼"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당사 담당팀 검토→수정계약서(안) 작성→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가맹점사업자 동의→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발생

당사는 가맹사업자가 수정계약서에 동의할 경우 그 계약서에 정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만약 수정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동안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수정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인이 가맹계약의 양도를 요청할 것 · 양수인이 당사의 가맹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 	양도 신청→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양·수도계약 체결→양도 완료	문의: 가맹전략팀 (02-2290-5746)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가맹비 및 가맹관련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당사에게 지급할 양도에 관련된 비용은 없으나 귀하의 사유로 가맹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상속 협의서를 제출하면 그에 따라 가맹점 영업을 상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속인이 영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대리 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위임된 범위 내의 점포 운영과 관련된 권리·의무	대리 신청(위임장 포함)→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승인여부 통지→점포 대리 운영	가맹비 및 가맹관련 보증금 납부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와 의무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내에 서면으로 상속신청→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승인여부 통지→가맹점 운영권 이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업무 위탁	불가능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롯데슈퍼와 동일한 업종 (슈퍼마켓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거나 귀하의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롯데슈퍼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를 활용하여 롯데슈퍼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롯데슈퍼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23:00 (13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최초 가맹계약 시 별도협의 가능, 법규	법규에 의한 휴무일 제외 영업	문의:가맹지원팀 (02-2290-5687)

에 의한 영업규제 시간 제외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개별점포별로 상이	직접 근무	배우자, 친·인척 등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점포관리 일체 (이행관리,유통기한,원산지,보관기준,서류관리,위생관리,안전관리,영업관리,CS 등)	담당자 매장 방문 →각 항목 체크 →가맹점사업자확인 →관리표 작성	1회 이상 /월	가맹지원팀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 및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단위 및 지역 단위]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비고
		본사 부담	가맹점 부담		
광고 행사	할인광고	공동부담	공동부담	전단 기안, 공지 및 광고상품의 행사원가 공급(가맹본부) 전단지제작 및 배포(가맹점)	-
	가맹점 모집광고	100%	-	-	-
판촉 행사	행사에 따라 다름	-	-	행사계획 공고→가맹점부담비율 제시→가맹점의 행사참여 결정→정산	-
멤버십 제휴서비스	포인트 사용·적립	-	100%	→월간 정산	필수
	할인행사 등	-	100% (행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행사계획 공고→가맹점 부담비율 제시→가맹점의 행사참여 결정→ 필요 시 정산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당사에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책 당사자는 Type별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로 끼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Type 1
본 가맹 계약 개점일 이후 3년 미 경과 시 : 로열티 x 12개월 본 가맹 계약 개점일 이후 3년~4년 미만 시 : 로열티 x 10개월 본 가맹 계약 개점일 이후 4년 이상 경과 시 : 로열티 x 8개월 * 로열티: 계약해지를 통지한 월의 직전 3개월간 평균 순매출액 기준 (법정 의무 휴무일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간의 영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월이 있는 경우, 해당 월 대신 그 전월을 포함하여 직전 3개월 평균 순매출액을 산정한다.)

Type 2	
1) "회사"의 계약해지 "회사"의 이익배분금 (가맹계약 제27조에 따른 매출총이익 - "경영주"의 이익배분액) 평균 금액 30%의 6개월분 (계약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	2) "경영주"의 계약해지 "경영주" 정산금 (가맹계약 제27조에 따른 위탁운영수수료+장려금) 평균 금액 30%의 6개월분 (계약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당사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 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330m ² 점 신규개설 기준	45일 내외	[17~21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담당자 배정	D-45	
사업설명·상담	계약서 제공(계약조항 설명), 정보 공개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입지선정, 점포입지 주변정보 제공	D-45~30	
최종 협의	개설 승인	D-34~30	
가맹계약 체결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지급	당사에 가맹금 지급	D-30~0	
점포실측/설계	투자비 산출	D-30~10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인테리어 공사	공사 실시		
교육 실시	점포운영교육 실시	5일~10일 소요	5일 (Type - 1) 10일 (Type - 2)
점포 개설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

정, 시장상황, 점포면적 및 위치, 해당 부동산의 현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당사가 가맹점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가맹점사업자가 당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당사 본사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각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단, 가맹점사업자는 이러한 관할의 합의가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에 관할 법원의 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 관할법원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및 시행령 제 13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 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환경개선일로 부터 3 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p>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p> <p>○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 차 : 청구일로부터 9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 차 : 1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 차 : 2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p>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반품 지원	시즌행사(명절세트, 발렌/화이트데이, 수능 등)시 입고되는 제품류 중 일정한 품목에 대하여 반품지원	시즌행사 제품류 중 반품지원 품목 지정상품에 한함	상품별 별도 공지	가맹점 실 매입상품 반품 (정상상품에 한함)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의 경영지도	프로그램,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진열, 정산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담당 FC 지정 → 월 1 회 이상 정기적 또는 수시 점포를 방문하여 현장지도 실시 ※ 점포 방문 횟수는 변경 될 수 있음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지원팀 (02-2290 -5687)
가맹점사업자 요청에 의한 경영지도	점주 요청사항 반영 희망하는 주제 위주의 경영지도	가맹사업자 요청 → 담당 FC 또는 담당자 점주와 스케줄 조율 후 매장방문 또는 집합교육 실시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지원팀 (02-2290 -5687)
	개점 시 실시한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 교육 재실시	가맹점사업자 교육신청서 작성 → 가맹본부는 교육일정 수립 및 일정 통보	가맹점부담 (교육내용별 인당 일백만원) ※ 입과교육시 발생하는 체재비 점주부담	문의: 가맹지원팀 (02-2290 -5687)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롯데슈퍼]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 내용 이외에도 가맹점 사업자의 경영 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 고
매출부진 경영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판매촉진을 위한 경영지원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맹계약기간	경영컨설팅 제공	
낙후점포 환경개선	점포환경개선을 통한 매출 리딩	재계약 의사 확인 후 점포 요청시	계약 만료 이전	점포	
전단 지원	매출 증대를 위한 점포 요청시 전단 지원	점포 요청시	가맹계약기간	마케팅 비용 처리	
One 쿠폰	매출 발생을 위한 쿠폰 발행 후 당사 마케팅 비용 처리	점포 요청시	가맹계약기간	마케팅 비용 처리	
표준진열도 지원	직영점 매출 리딩 품목에 대한 공유 및 SUPERVISING	점포에 맞는 표준진열도 작성 및 제공	가맹 계약 기간	점포 지원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롯데슈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가맹점 경영의 개요 상품의 매입, 진열, 판매방법 각종 장표,서류의 작성 및 회계 POS시스템의 조작, 활용방법 기타 점포운영 방법	집합교육 3일	점포 개점 전	필수교육 (TYPE-2 의 경우 10일)
	점포운영의 실습 장표 및 서류 등의 실제 작성 실무경험과 그 지식의 운영	실습교육 2일		
보수 교육	부족한 직무역량 보완, 시스템 활용 문제점 해소 DIV 운영상 문제점 해소	집합교육	교육 통보 시 해당 기일 이내	
서비스 교육	고객 서비스 마인드 확립 고객 응대/인사 훈련 올바른 용모/복장	권역별 현장교육	교육 통보 시 해당 기일 이내	필수교육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롯데슈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 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5일 (TYPE 2의 경우 10일)	-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1일	실비	필요 시
서비스 교육	1일	실비	필요 시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맹점사업자)와 [롯데슈퍼] 가맹점 관리자 1인이 함께 받아야 합니다. 만일 개점 후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점의 관리자

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될 자를 반드시 변경 전에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개점 후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점의 관리자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될 자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경우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추가인원에 대한 교육을 당사에 요청하여 받아들여진 경우 그 인원에 대한 교육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신규 교육은 가맹계약서 제20조 (Type - 2의 경우 11조) 에 따라 개점일 전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수 교육은 가맹계약서 제21조 (Type - 2의 경우 11조) 에 따라 당사가 통지 드리는 날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불참 시 당사로부터 받게 되는 별도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점포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교육이기에 점포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No.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전농점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10
2	경기	광주점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251-17 성원프라자 B1층
3	경기	상록수점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874 상록수 아카데미 1층
4	인천	신현점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34-25
5	경기	정자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4-2
6	경기	탑동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5-4 현대 탑월드 1층
7	경기	안양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3동 900-10
8	서울	장안점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4동 94-27

9	서울	송파점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21번지
10	서울	여의점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
11	경기	광명점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40번지
12	서울	상계11점	서울시 노원구 상계8동 651번지
13	서울	방학점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1-2
14	서울	신반포점	서울시 서초구 반포2동 2-8
15	대전	엑스포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6-3 엑스포코아 지하
16	인천	연수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32번지
17	서울	범서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308-1외 4필지
18	서울	프리미엄 푸드마켓 서초점	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1685-8 센트럴프라자 B1층
19	충북	장락점	충북 제천시 장락동 632
20	경기	용인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2-8
21	경기	일산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69-4
22	서울	잠원점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8-24 뉴타운빌딩 B1
23	부산	연산점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490 -10
24	대전	중촌점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16-10번지 제일프라자 1층
25	전남	하당점	전남 목포시 상동 980-1
26	전북	삼천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285-5
27	전남	한마음 회관점	전남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2178-2
28	광주	두암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985-1
29	광주	풍암점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109
30	전북	효자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1동 197-2
31	대구	프리미엄 푸드마켓 황금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368번지 캐슬골드파크 중앙상가
32	대구	남산점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971-11번지
33	대구	수성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333-7 외 14필지
34	서울	프리미엄 푸드마켓 잠실점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8
35	대구	복현점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539-123 외 2필지

36	대구	월성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619외 4필지
37	전북	남원점	전북 남원시 도통동 584-2, 584-3
38	경북	포항점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641-1외8필지
39	경기	수지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93-1
40	경남	양산남부점	경남 양산시 남부동 607-7번지
41	충남	신부점	충남 천안시 신부동 75-1 外
42	경기	언남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419-1,2번지
43	서울	쌍문점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19번지 LG트윈빌 1층
44	서울	공릉점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38-53
45	충남	백석점	충남 천안시 백석동 889번지
46	서울	신천점	서울시 송파구 잠실1동 19-8 엘스상가 1층
47	서울	서초3동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1-2번지 서초타운 1층
48	서울	역촌점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17-1, 2, 14
49	서울	정릉점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1043번지
50	부산	당리점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115번지
51	서울	프리미엄 푸드마켓 공덕점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23-3외
52	경북	경주동천점	경북 경주시 동천동 825번지
53	서울	창천점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506-20번지
54	경기	용인동천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387-6
55	서울	남가좌점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40번지외 동부센트레빌
56	경기	인계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62
57	경기	녹양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91-1
58	부산	명지점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31번지 영어도시 링컨 타운 퀸덤몰상가
59	경기	송정점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317-3
60	경북	성주점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339-3번지외 1필지
61	경기	교문점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808번지 덕현상가
62	경기	평택점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763-3
63	경남	합천점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698
64	경기	우만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59-7번지
65	경기	분당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61-2번지
66	서울	가락점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번지

67	경기	철산점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373번지
68	서울	남현점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1059-16번지
69	서울	잠실3동점	서울시 송파구 잠실3동 35-2 트리지움상가
70	경기	당수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273-3외 5필지
71	경기	오산점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877-21
72	경남	함양점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167-2번지
73	강원	영월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251-2
74	경기	세교점	경기도 오산시 세교택지개발지구 주차장 17BL
75	충남	보령점	충남 보령시 죽정동 646-4
76	강원	평창진부점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206-9외 1필지
77	부산	부산학장점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573-1
78	대전	대전둔산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08 샘머리아파트주상가
79	부산	부산문현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358-9, 655-132
80	서울	원효로점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가 133-3외 1필지 리첸시아 용산
81	경기	산본2동점	경기도 군포시 산본2동 1066-2
82	서울	길동점	서울시 강동구 길동 384-1 HB골드빌아파트 1층
83	경기	포천일동점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82-3
84	인천	인하대점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92-17
85	경기	광명소하점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신촌지구 1-1,2 신촌프라자
86	경북	칠곡중리점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142-1외 2필지
87	경기	의왕오전점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30 성원1차APT 상가 1층
88	경기	남양주도곡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025-6 인덕빌딩
89	경기	광주도평점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90	경기	화성봉담점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11-4
91	서울	G유진점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48-84 유진상가 1층
92	경기	G신곡점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560번지
93	서울	G목동점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3 목동@ 3단지 관리동
94	경기	G소사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97-1
95	서울	G화곡점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830-1 신라쇼핑센타 내
96	경기	G전곡점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66
97	서울	그랑그로서리 도곡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아카데미스위트 지하 1층
98	강원	G춘천점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381-1

99	강원	G철원점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704-29
100	서울	G은마점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은마아파트종합상가
101	서울	G대림점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784-2
102	충북	G북대2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북대동 489-1
103	경기	G운정점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교하신도시주차장
104	서울	G은평점	서울시 은평구 진관2로 117
105	충남	두정2점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591
106	인천	인천동양점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578
107	서울	창동2점	서울시 도봉구 창동 274-5,269-2, 270-10, 269-4
108	충북	광혜원점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423-2번지
109	경남	삼천포점	경남 사천시 벌리동 270-3
110	부산	부산화명점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898-9 일원 B-109호
111	경기	망포역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322-3외 12필지
112	경기	남양주호평점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269-1
113	경기	G고양삼송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23
114	경기	우만1동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단문로 131번길 66
115	인천	연수함박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07-7
116	경기	용인동백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623-8
117	경기	김포전원점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992-1번지
118	경기	고양원흥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도래울2로 3번지
119	충남	아산용화2점	충남 아산시 용화동 1455
120	강원	G속초조양점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211
121	인천	인천청라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67-1번지
122	서울	신도림점	서울시 구로구 신림동 388-5
123	대구	대구대실점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427번지
124	경기	회룡역점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51-1
125	인천	인천청라2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67-1번지
126	서울	위례중앙점	서울시 위례신도시 C1-3블럭 위례 1차 아이파크
127	경북	경주용황점	경북 경주시 용강동 용황택지구 협성휴포레
128	경기	광명일직점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주상1블럭
129	서울	프리미엄 푸드마켓 일원점	서울시 강남구 일원로 121 삼성생명 일원빌딩 B1F
130	서울	반포2점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4-1 쌍동빌딩 1층

131	부산	부산영도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770, 1층
132	경북	포항장성점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977번지
133	경기	프리미엄 푸드마켓 기흥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227-10 B1F
134	경기	용인남사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213-1
135	부산	프리미엄 푸드마켓 용호점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54
136	경기	(백)일산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3
137	울산	울산무거점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468-1
138	경기	화성와우리점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221-75번지
139	경기	평택비전점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1104번지
140	경기	프리미엄 푸드마켓 용인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충부대로 1294 B1F
141	강원	G태백점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00-26
142	서울	올림픽점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9-12번지
143	경기	기흥아울렛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280 롯데프리미엄 기 흥아울렛 B1F
144	경기	하남감일점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528-1 감일지구 푸리마타워
145	전북	덕진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481-1번지
146	경기	산본피트인점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45-6, 1층
147	서울	봉화산역점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646 금강리빙빌스텔 B1F
148	부산	부산남산점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117-15 정암프라자
149	경기	남양주진접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로 17-1
150	서울	삼성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2 지하1층
151	전남	목포용해점	전남 목포시 용해지구로 79
152	경기	평택고덕점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2511-7
153	광주	첨단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654-2
154	경기	하남망월점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081 1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13년 4개월	정책 변경에 따른 간판 교체 실시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5,281,797	당사의 직영점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기재한 것 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전략팀(02-2290-574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포괄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제 55 기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

제 54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제 53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재무상태표

제 55 기 2024.12.31 현재

제 54 기 2023.12.31 현재

제 53 기 2022.12.31 현재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